급용위원회 보도자료					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	20	22. 5. 11.(수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	장	박주영 (02-2100-2530)
<총괄>	<총괄> 금융혁신과		사 두	- 관	오형록 (02-2100-2533)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

- '22.5.11. 금융위원회, ㈜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신규 등록 -

주요 내용

- □ '22.5.11일 ㈜디에셋핀테크, ㈜티지에스파이낸스, ㈜온투인 등 3개社가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(누적 47개社 등록)
 - 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 (단,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·상환 등 업무는 지속)하고,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
- □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
 -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, 과도한 리워드 지급,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
 - 차입자는 **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(연 20%)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** 확인 필요

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

□ '22.5.11일자로 ㈜디에셋핀테크, ㈜티지에스파이낸스, ㈜온투인 등 3개社가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온투법')상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이하 '온투업자')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.

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>

신청인	대표자	회사 주소	웹사이트 주소
㈜디에셋핀테크	조병화	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6길 63	theassetfund.com
㈜티지에스파이낸스	권영묵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	www.tgsfinance.co.kr
㈜온투인	권성한	서울 송파구 오금로178길 중산빌딩	www.ontwo.co.kr

< 참고 :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>

자기자본 요건	·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
❷ 인력 및 물적설비	·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, 통신설비, 보안설비 등 구비
❸ 사업계획, 내부통제장치	· 내부통제장치 마련,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
4 임원	·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, 제재사실 여부 등
6 대주주	· 출자능력,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
6 신청인	·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

-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*되고,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, 영업행위 규제,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
- **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

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가. 투자자 유의사항

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

○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**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**되는 고위험 상품이며,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② 손실보전행위,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이 주의

- 투자자 **손실보전**, **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***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**불완전판매** 및 **부실대출 취급 가능성**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 - * 높은 리워드·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, 「대부업법」의 최고이자율(연 20%)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

- ※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(법 제12조제9항, 시행령 제12조)
- · 온투업자가 **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**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
- · 투자자 등에게 **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**에 벗어나는 **금전·물품·편익 등을** 제공하는 행위 금지

③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

-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, 대규모 사기·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※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(법 제32조제1항)
- ·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**연계대출잔액의 7% 이내** 또는 **70억원 중**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(단,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, 21억원 한도)

나. 차입자 유의사항

- □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
 - '21.7.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%로 인하되었으며,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*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단, 담보권 설정,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

③ 향후 계획

□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**등록 신청서**를 **제출**한 **기존 업체들**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**신설 업체들**에 대하여 **등록심사**를 **진행중**이며,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**심사 결과를 확정**할 예정입니다.

-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,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·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,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.
- **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** P2P업체들의 **폐업 가능성**에도 대비하겠습니다.
- □ 아울러,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
 -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**잔존업무**를 처리하고 **채권추심업무**를 수행할 수 있도록 **법무법인** 및 **채권추심업체**와 **사전 계약**토록 하고 있습니다.
 -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·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^{*}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^{**}하고 있습니다.
 - *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,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, PG사 등
 - **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
 - 대출잔액,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**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**의 **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**의 **대출로 대환**할 수 있는 방안^{*}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- *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(www.mla.or.kr)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	장	박주영 (02-2100-2530)
<총괄>	금융혁신과	담당자	사 두	- 관	오형록 (02-2100-2533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	장	정용걸 (02-3145-6771)
	저축은행감독국	담당자	팀	장	홍진섭 (02-3145-6774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	장	이길성 (02-3145-7410)
저축은행검사국	담당자	팀	장	황정훈 (02-3145-7405)	
<공동>	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	책임자	회	장	임채율 (02- 761-2780)
		담당자	사무	차장	한성택 (02- 761-2781)





신규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('22.3말 기준)

1. ㈜디에셋핀테크

상호	㈜디에셋핀테크	홈페이지	theassetfund.com	
주소	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63	대표이사	조병화	
누적대출액	2,366억원	6억원		
영업특징	·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			

2. ㈜티지에스파이낸스

상호	㈜티지에스파이낸스	홈페이지	www.tgsfinance.co.kr	
주소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	대표이사	권영묵	
누적대출액	10억원 대출잔액 3억원			
영업특징	·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			

3. ㈜온투인

상호	㈜온투인	홈페이지	www.ontwo.co.kr	
주소	서울 송파구 오금로178길 중신빌딩	대표이사	권성한	
누적대출액	-	-		
영업특징	· 농업인·소상공인 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			